

의안 검토 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별 첨
4. 검 토 의 견 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12월 18일
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전문위원 임 목

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09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조례의 용어를 쉽게 이해되도록 정비하고,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
변경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중 의회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고자
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를 정비함(안 제1조, 안 제3조, 안 제9조)
- 나. 결산검사위원 중 의회의원에게도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
하고, 일비 지급기준을 정함(안 제10조).
- 다. 결산검사위원 여비지급을 「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를
준용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함.(안 제12조 제2항).

3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일부용어를 법령입안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,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
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함.